

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명령하여야 한다.
- 마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| 행정처분기준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       | 3차 이상 위반    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 | 법 제30조제1항 제1호 | 지정 취소  | 지정 취소        | 지정 취소        |
| 나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   | 법 제30조제1항 제2호 | 시정명령   | 업무 정지<br>3개월 | 지정 취소        |
| 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| 법 제30조제1항 제3호 | 시정명령   | 업무 정지<br>1개월 | 업무 정지<br>6개월 |